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2591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2.
발의자 : 박영순 · 김민철 · 박정
이장섭 · 윤영덕 · 안민석
김교홍 · 최인호 · 조승래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,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·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(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)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

는 것임(안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

우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 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

⑥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· 지정기준과 운영,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전문지원기관) ① ~ ③ (생 약) <u><신 설></u></p>	<p>제32조(전문지원기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</u></p> <p><u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</p> <p><u>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지원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</u></p> <p><u>⑥ 전문지원기관의 설치 · 지정 기준과 운영,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